

형 법

문 1.(배점 2)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프랑스인 甲은 미국의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였다.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로 피신하였으나, 항공기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 ② 러시아인 甲은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항공기를 납치하였으나, 기체고장으로 대한민국의 김해국제공항에 불시착하였다.
- ③ 중국인 甲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 ④ 캐나다인 甲은 미국에서 대한민국국민 A를 살해한 죄로 미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미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⑤ 일본인 甲은 독일 뮌헨시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대한민국국민 A로부터 국제학생증을 절취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문 2.(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甲의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③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법익침해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④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형이 감경된다.
- 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 3.(배점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은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등을 주된 근거로 들며, 형식설(법원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를 지도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 ⑤ 살인죄와 같은 단순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정형의 동가성(동가치성)은 전자의 경우에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문 4.(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 ③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 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결과발생이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행위자는 해당 친족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⑤ 형법은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미수와 불능미수는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따라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 ②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는 근거에 관한 이론 중 위법성(불법)소멸설이나 책임소멸설은 현행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특수강간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강간치상미수죄가 성립한다.
-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문 6.(배점 3)

아래 문서죄에 관한 사례에서 甲의 죄책을 <보기>에서 골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며, 甲에게는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가. 甲은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4살 어린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다방 업주에게 교부하였다(그 가명을 그 다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함).
- 나. 甲은 이미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위조 부분은 논외로 함)를 스캐너로 읽어들이어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였다.
- 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 라. 甲은 乙로부터 乙이 등록한 '○○부동산'의 등록 명의를 빌려 중개행위를 하던 중,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자신을 '○○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증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甲'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보기>

- A. 사문서위조죄 B. 위조사문서행사죄
C. 공문서위조죄 D. 위조공문서행사죄
E.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F.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G. 무죄

	가	나	다	라
①	G	A와 B	C와 D	E와 F
②	A와 B	B	A와 B	E와 F
③	G	G	C와 D	A와 B
④	A와 B	G	A와 B	G
⑤	A와 B	B	C와 D	E와 F
⑥	G	A와 B	A와 B	G

문 7.(배점 2)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②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④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형법의 해석상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낙태행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에 대한 훼손이나 임신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신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

문 8.(배점 4)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ㄴ. 위 'ㄱ'과 같은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문이나 제3자의 말, 인용된 보도의 존부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ㄷ.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ㄹ.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 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ㅂ.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을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적시사실의 진실성 및 공익관련성의 존부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ㄱ, ㄷ, ㄹ, ㅁ ⑥ ㄴ,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ㄴ, ㄷ, ㄹ, ㅁ, ㅂ

문 15.(배점 2)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소유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토지에 철주를 세우고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그에 인접한 상가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② 신문기자가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에게 수차례 조세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주고 나오면서 취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 ③ 채무자가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해 갈 수 있어, 채권자가 자신의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가구점에 들어가 화물차에 가구들을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경우
- ④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경우
- ⑤ 택시운전사가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가정주부들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로 얻어맞게 되자,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가는 것을 빙자하여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경우

문 16.(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병원의 마취전문간호사인 甲과 외과과장인 乙이 공동하여 위 병원에서 A를 상대로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甲은 마취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집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마취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의사인 乙의 지시 없이 A의 요추에 마취액을 투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였다. 한편, 수술받던 A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수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A는 그로 인하여 혈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저하 및 무호흡으로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甲은 공판과정에서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의료법위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① 甲이 주장하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②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무면허의료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면 의료법위반죄의 고의책임이 인정된다.
- ③ 만일 甲이 관련 의료법 규정을 몰라 무면허의료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과실 유무는 甲의 주관적인 주의 정도가 아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A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甲과 乙 사이에 분업적 협력에 의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甲의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문 17.(배점 3)

사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甲은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으나 귀찮은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간단한 응급처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A는 10여분 후 사망하고 말았다.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기능설)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ㄴ. 乙은 B와 호텔방에서 다투던 중 상해의 고의로 B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B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乙은 B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B가 자살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호텔방 베란다에서 B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에 B는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판례에 의하면 乙은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 ㄷ. 丙은 C가 자신의 처 D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다. C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丙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인근 개울가에 웅덩이를 파고 C를 파묻었는데, 사실 그 때까지 살아 있었던 C는 이로 인하여 질식사하여 사망하였다. - 판례에 의하면 丙은 살인죄의 기수범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 ㄹ. 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E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丁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상상적 경합
- ㅁ. 소방관 戊는 화재진압 도중 건물 1층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5세의 F를 발견하고 달리 다른 구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위하여 F를 두터운 이불에 싣 뒤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F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하나인 위험감소원칙에 의하면 戊는 상해죄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1.(배점 3)

다음 사례에 대하여 <보기>의 견해에 따른 결론으로 옳은 것은?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 A의 살해를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맨 정신으로는 A를 살해할 용기가 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셨다. 만취상태가 된 乙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A의 살해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한 나머지 가게 앞에 누워 있는 노숙자 B를 마네킹으로 오인하고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보기>

- 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과 관련하여 원인설정행위가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이며, 심신장애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과 관련하여 원인설정행위와 심신장애상태에서의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 III.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여 고의 혹은 과실의 결과실현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를 예견하였으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결과실현행위가 과실범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
- IV.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예견한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 ① I에 의하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② II에 의하면 乙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판례는 III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B의 상해에 대해 乙에게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IV에 의하면 B의 상해에 대하여 乙에게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II에 따를 때 판례에 의하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범이 성립한다.

문 22.(배점 3)

다음은 이른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가) 경우와 같이 (나) 때에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설은 (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데 반하여, 적극설은 (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보기>

A.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양복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주머니가 찢어져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른 소매치기가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그만 둔

- B.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나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치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곧 후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하게 한 (위험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함)
- C.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자의로 중단하거나 결과방지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 D. 행위 당시에 이미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실행행위를 그만 둔
- E.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발생이 가능한 결과를 자의로 중단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제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의 불균형이 생긴다
- F.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단이나 적극적인 방지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가) (나) (다) (라)

- | | | | | |
|---|---|---|---|---|
| ① | A | C | E | F |
| ② | A | D | F | E |
| ③ | A | D | E | F |
| ④ | B | C | F | E |
| ⑤ | B | C | E | F |
| ⑥ | B | D | F | E |

문 23.(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동일한 형벌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의 합헌결정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24.(배점 3)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지만 한 경우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몰수할 수 없다.
- 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ㄷ.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현금은 몰수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ㄹ. 금품선거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며칠 후 그 영장에 기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면, 그 압수가 위법하여 그 돈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 ㅁ.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압수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5.(배점 3)

다음 <보기>에서 甲에게 () 속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조직폭력배인 甲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가 영업이익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업소 앞에 폭력배들의 차량을 주차해 놓아 A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업무방해죄)
- ㄴ. 甲은 절취의사로 A의 핸드백을 낚아채다가 A가 핸드백 끈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A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준강도미수죄)
- ㄷ.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계속 머무르다가 같은 날 야간에 A 소유의 재물을 절취해 나왔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ㄹ. 甲은 지나가는 행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도주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 A가 자신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강도죄와 공무원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6.(배점 3)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벌금의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 ㄷ.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ㄹ.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⑥ ㄷ, ㄹ, ㅁ

문 27.(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아낸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32.(배점 2)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ㄴ. 형법은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벌금형의 하한은 감경할 수 없다.
- ㄷ. 주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지 않더라도 추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지만 공소제기 되지 않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 ㅁ. 수형자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벌금형의 시효는 중단된다.
- ㅂ. 밀수전용의 선박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선박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 ② ㄱ(○), ㄴ(○), ㄷ(○), ㄹ(○), ㅁ(×), ㅂ(○)
- ③ ㄱ(○), ㄴ(×), ㄷ(×), ㄹ(×), ㅁ(×), ㅂ(○)
- ④ ㄱ(○), ㄴ(×),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 ⑥ ㄱ(×), ㄴ(○), ㄷ(○), ㄹ(○), ㅁ(×), ㅂ(×)

문 33.(배점 2)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양자는 범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범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③ 범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인데 반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⑤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문 34.(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②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뇌물죄에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가 포함되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제외된다.
- ⑤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소비한 후 증뢰자에게 다른 돈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3,000만 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문 35.(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업무방해죄는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 ③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위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였다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문 36.(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장 甲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장인(丈人) A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 乙에게 “어떻게 해서든 네 차에 A를 태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A가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해라”고 교사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사건 당일 집을 나오는 A를 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A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

- ① 위 사례에서 甲은 존속감금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② A가 정신병자인 경우에도 乙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 ③ 감금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에 대해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만약 乙이 A를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A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약 1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도주하였다면, 乙은 감금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 ⑤ 만약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달리던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乙이 A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乙은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문 37.(배점 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설>

- 가.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고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자가 공범이다.
- 나. 행위수행의 시간적 연관을 기준으로 행위 시에 가담한 자가 정범이고 그 전이나 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다.
- 다. 자기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자는 정범이고 타인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자는 공범이다.
- 라.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조종·지배한 자가 정범이고 단순히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는 공범이다.

<비판>

- A. 이 학설은 형법상의 촉탁살인, 촉탁낙태는 물론 제3자를 위한 사기나 공갈을 범한 자를 정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함이 있다.
- B. 이 학설은 행위지배의 유형이 정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결함이 있다.
- C. 이 학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사실을 실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접정범이나 집단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 D. 이 학설은 실행행위 시에 방조한 자도 정범이 되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결함이 있다.

- ① 가-C, 나-B
- ② 가-B, 다-A
- ③ 나-D, 다-C
- ④ 나-D, 라-B
- ⑤ 다-A, 라-C

문 38.(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전문수렵인인 甲과 乙은 함께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총을 발사하자고 서로 손짓을 한 후 동시에 사냥총 1발씩을 각각 발사하였으나, 그 물체는 멧돼지가 아니라 심마니 A였다. 甲과 乙이 쏜 총알 중 1발은 옆의 나무에 맞았고, 다른 1발은 A의 심장에 맞아 A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알은 누가 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 ① 고의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하므로, 甲과 乙은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② 과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⑤ 과실범 상호 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비록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A의 사망은 甲 또는 乙의 과실행위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甲과 乙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된다.

문 39.(배점 2)

위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표지이며 객관적 구성요건은 그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충족된다.
- ㄴ.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ㄷ.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 ㄹ.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문 40.(배점 2)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 ①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②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부녀자들인 A와 B를 강제로 추행함에 있어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B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B에 대한 범행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폰으로 A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으나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⑤ 甲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여자인 A를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A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